

2025년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근무 본부점	주요업무
체험형 청년인턴1 (보증)	약 3개월	100명	전국 영업점(40개)	신용보증 기한연장, 기업신용 상시관리 등
체험형 청년인턴2 (보증)	약 8개월	59명	전국 영업점(59개)	
체험형 청년인턴1 (관리)	약 3개월	20명	영업본부(8개)	보증채무이행 업무, 구상권관리 업무 보조 등
체험형 청년인턴2 (관리)	약 6개월	17명	재기지원단(14개)	
체험형 청년인턴2 (보험)	약 8개월	12명	보험·보상센터(12개)	신용보험 자료수집 등

* 각 채용분야별 채용단위와 근무 본부점명, 채용인원 등은 '(붙임1) 채용분야별 채용단위 운영현황' 참조

** 채용분야 및 채용단위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발견 시 모두 불합격 처리

2.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1990. 2. 15.이후 ~ 2007. 2. 14.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채용일('25. 3. 24.예정)부터 근무 본부점에서 출퇴근 가능한 자(숙소제공 불가)
-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 제12조, 붙임2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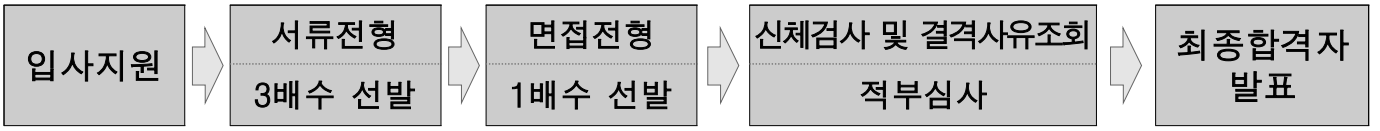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체험형 청년인턴1(보증) ➡ 2025. 3. 24.(월) ~ 6. 23.(월)
체험형 청년인턴2(보증) ➡ 2025. 3. 24.(월) ~ 11. 21.(금)
체험형 청년인턴1(관리) ➡ 2025. 3. 24.(월) ~ 6. 23.(월)
체험형 청년인턴2(관리) ➡ 2025. 3. 24.(월) ~ 9. 23.(화)
체험형 청년인턴2(보험) ➡ 2025. 3. 24.(월) ~ 11. 21.(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09:30~16:30, 10:00~17:00, 10:30~17:30 중 근무 본부점과 협의 후 택1)
- 급여조건 : 월 160만원 수준 (세전, 세금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지원사항 :
 - 계약기간까지 근무한 청년인턴에 한해 인턴수료증 발급
 - 청년인턴 우수활동자는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 예정
 - 취업시험 응시 등 취업 활동에 대하여 확인 후 특별휴가, 출장 등 부여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1. 31.(금) ~ 2. 14.(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5. 전형절차 및 방법



※ 세부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 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약식논술’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 지원자가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서류합격처리
 - 단, 가점 적용 전 서류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2. 26.(수) 예정

② 면접전형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면접일정 : 2025. 3. 4.(화) ~ 3. 6.(목) (영업본부별 실시 예정)
 - * 각 채용단위별 근무 본부점이 소속되어 있는 영업본부에서 면접 실시 [체험형 청년인턴1(관리) 채용분야도 지원한 영업본부에서 면접 실시]
-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 합격자로 선발하고 채용단위별 일정 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 채용단위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은 0.5배수, 2~9명은 1배수, 1명은 2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12.(수) 예정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기본인성 고득점자 → (면접)직무능력 고득점자 → 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 처리,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6. 가점 및 우대사항

▶ 가점은 '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반드시 관련서류 사전 확인 후 입력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 각 전형절차의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가 점 항 목	세 부 가 점 대 상	전형별 적용 가점	
		서류전형	면접전형
①취업지원 대 상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5% 또는 10%	5% 또는 10%
②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5%
③사회적 배 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본인 명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20.1.31.이후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 	5%	5%
④한국사	■ 1급 또는 2급	2%	-

주1)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5.2.14.)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주2) 적용 가점은 각 전형별 평가점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주3) 동일 '가점항목'내 세부 가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주4) '가점항목'①(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주5) '가점항목'①,②,③,④에 대하여 가점을 중복하여 인정. 단, 서류전형은 '가점항목'②,③,④ 중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 면접전형은 '가점항목'②,③ 중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5%까지 인정

7. 증빙서류 등 제출

-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제출 예정)
-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 전형절차 및 방법' 및 '6.가점 및 우대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 증빙 서류는 2025. 2. 14. 이후(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구 분	증빙서류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4세 초과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우대 대상자</p> <p>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p> <p>② 한부모가족 ③ 북한이탈주민 ④ 다문화가족 ⑤ 자립준비청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다문화가족 : (1) 가족관계증명서 (2) 아래 서류 중 택1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 표시) 또는 제적등본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⑤ 자립준비청년 : 아래 서류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8. 기타사항

- 자기소개서, 약식논술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불가
-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 매 전형에서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둘째자리 산출값 기준으로 처리
-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및 계약해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단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총원기한(2025. 5. 13.) 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 후 총원 예정
- 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통지일로부터 초일산입하여 6일 이내 신체검사결과지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하고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연락 예정
- 근무부점 배치 후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단위내 타 부점으로 이동 배치 가능
- 제출한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 (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5. 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채용분야별 채용단위 운영현황

▶ 아래 표로 구분된 채용분야·채용단위 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채용단위 내 근무 본부점이 복수인 경우 최종 합격 시 해당 채용단위 내 근무 본부점 중 한 곳으로 배치 예정.

* 근무 본부점이 복수인 채용단위는 희망 근무부점 1,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나 희망 근무부점 이외로도 배치 가능

○ 체험형 청년인턴1(보증) 총 100명

본부	채용단위	인원	본부	채용단위	인원
서울 서부	가산디지털·마포·영등포·충정로·강북·강서·남대문	18	인천	인천중앙·부천·청라	8
				시 화	2
	고 양	3	부산 경남	부산·사상·동래·사하	11
김 포	2	창원·마산		5	
서울 동부	강남·광진·송파·테헤란로·동대문·방배·양재	18	대구 경북	대구·대구서·성서	7
경기	수원·안양·성남·경기광주	10	충청	대전·대전중앙	5
	화 성	2		청 주	2
호남	광산·광주	5			천 안

○ 체험형 청년인턴2(보증) 총 59명

본부	채용단위	인원	본부	채용단위	인원	본부	채용단위	인원
서울 서부	의 정 부	1	호남	전주·전주서	2	대구 경북	경 산	1
	포 천	1		광주첨단	1		구 미	1
	파 주	1		군 산	1		수 성	1
	제주·서귀포	2		목 포	1		포 향	1
서울 동부	강 동	1	인천	여수·순천	2	충청	달 성	1
	남양주	1		익 산	1		칠 곡	1
	하 남	1		정 읍	1		경 주	1
	강 릉	1		인 천	1		안 동	1
	동 해	1		남 동	1		영 주	1
	속 초	1		반월·안산·시흥	3		아 산	1
	원 주	1		부 평	1		충 주	1
춘 천	1	김해·김해중앙	2	제 천	1			
경기	용 인	1	부산 경남	녹 산	1	충청	서 산	1
	평택·오산	2		울산·울산북	2		당 진	1
	군 포	1		진 주	1		보 령	1
	이 천	1		양 산	1		세 종	1
	화성서	1		통 영	1		진 천	1

○ 체험형 청년인턴1(관리) 총 20명

채용단위	인원	채용단위	인원
서울서부영업본부(서울 마포구 공덕동)	3	부산경남영업본부(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3
서울동부영업본부(서울 서초구 서초동)	3	대구경북영업본부(대구 중구 동문동)	3
경기영업본부(수원 팔달구 인계동)	2	호남영업본부(광주 동구 대인동)	2
인천영업본부(인천 남동구 구월동)	2	충청영업본부(대전 동구 정동)	2

○ 체험형 청년인턴2(관리) 총 17명

본부	채용단위	인원	본부	채용단위	인원
서울서부	마포재기지원단 영등포재기지원단	3	부산경남	부산재기지원단	1
	고양재기지원단	1		경남재기지원단	1
서울동부	동대문재기지원단 강남재기지원단	3	대구경북	대구재기지원단	2
	경기	화성재기지원단		1	호남
인천	인천재기지원단	1	충청	전주재기지원단	1
	안산재기지원단	1		대전재기지원단	1

○ 체험형 청년인턴2(보험) 총 12명

본부	채용단위	인원	본부	채용단위	인원
서울서부	서부신용보험1센터 서부신용보험2센터 중부보험보상센터	3	부산경남	부산신용보험센터	1
	서울동부	동부신용보험1센터 동부신용보험2센터		2	대구경북
경기		경기신용보험센터	1	호남	광주신용보험센터
인천	인천신용보험센터	1	충청	대전신용보험센터 남부보험보상센터	2

※ 체험형 청년인턴1(관리)를 제외한 각 본부점의 소재지는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의 영업점 찾기를 활용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